

주·정차 위반 과태료(수시,독촉,압류통지)고지서 2020.3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·정차(CCTV)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『도로교통법』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,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, 과태료 부과·독촉 및 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미거주,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,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및 『지방세기본법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1. 제 목 : 주정차위반 과태료(수시,독촉,압류통지)고지서 2020.3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위반 내용 : 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및 제34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
3. 근거 법규 :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및 제15조

4. 공고 기간 : 2020. 4. 2. ~ 2020. 4. 25.

5. 공시송달 대상자 : “불임” 공시송달대상자명부 참조

6. 공고 사항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(“불임”명단참조)는 달성군청 교통과(☎668-3022~5) 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아울러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5%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.

다. 만일 공고기일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 및 『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(사)의 재산이 압류(대체압류 포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8. 문 의 처 : 달성군 교통과(☎053-668-3022~5)

2020. 4. 2.

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

